

의안번호	제 677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8월 21일

#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7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 이광희, 김영주, 이양섭,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이숙애

## 1. 제정이유

- 최근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증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나.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규정 (안 제5조)
- 다. 도내 장애인 대상 3년 단위 실태조사 규정 (안 제8조)
- 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12조)
- 마.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22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 중 장애인 2분의 1 이상)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 41호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함.

라.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 그 시행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 등)** ① 장애인은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의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장애인은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근로, 여가·체육·문화, 정보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장애인을 비롯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와 시·군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⑤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4.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개선
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해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장애인의 차별사례, 인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도 및 시·군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면(對面) 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민간 조사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조사원을 위촉·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별도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하 “장애인인권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도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2. 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3.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도 내 교육기관,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장애인인권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제보자 등 보호)**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공익제보자 및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등 인권에 관한 상담 및 피해 회복 지원
2. 제5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5. 장애인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도민 인식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국장,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단체의 장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3. 학계 전문가
4. 법조인
5.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시설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익제보자의 보호)**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도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거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 및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조례안에서 규정한 예산 수반 사업의 비용을 추계함.

## 2. 비용발생 요인

-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및 업무 위탁 관련 비용 지원

## 3. 관련조문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8조(실태조사), 제12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기본계획 수립(용역),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및 업무 위탁비용 지원

### 나. 추계결과: '17년~'21년까지 총1,227,000천원(연245,400천원) 정도소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 30,000천원
- 장애인 실태조사 : 190,000천원
  - 장애인 차별사례, 인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년) : 100,000천원(50,000천원×2회)
  - 장애인 거주설 인권실태조사(매년) : 90,000천원(18,000천원×5회)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업무 위탁 : 1,007,000천원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 1,007,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 도비 100%
-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 차별사례, 인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년 단위) : 도비 100%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매년) : 도비 100%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업무 위탁 : 국비 50%, 도비 5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 최 영 지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13,000	326,000	246,000	246,000	296,000	1,227,000
국 비	47,5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503,500
도 비	65,500	212,000	132,000	132,000	182,000	723,500
시군비						
세 출	113,000	326,000	246,000	246,000	296,000	1,227,000
기본계획수립		30,000				30,000
장애인실태조사		50,000			50,000	100,000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설치·운영	95,000	228,000	228,000	228,000	228,000	1,007,000
재원 조달	113,000	326,000	246,000	246,000	296,000	1,227,000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113,000	326,000	246,000	246,000	1,227,000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	-	-	-	-	-